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4. . . (제 회)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부의 보훈정책 총괄 및 기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을 신설하면서 보훈정책실에 설치한 보훈정책관을 폐지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보훈정책실 1개 과를 폐지하면서 정원 3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보훈 관련 국제협력 기능을 보훈정책실에서 기획조정실로 개편하고,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훈단체협력관 밑에 1개 담당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보훈정책실을 보훈문화정책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보훈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국가보훈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8. 2. ~ 8.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보훈정책실”을 “보훈문화정책실”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7조제3항(종전의 제2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22호부터 제2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 내 각종 정책과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3.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및 중장기 발전전략의 수립·종합 및 조정
4. 부 내 정책 관련 연구의 총괄·조정

5. 국가보훈위원회의 운영·관리

16. 보훈과 관련된 국제 교류·협력 추진업무의 총괄·조정

17.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정보의 교환·수집 및 분석

18.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공동 조사·연구 및 기구의 설치

19.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행사의 공동 개최 및 지원

20.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21.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및 후손에 대한 예우·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의 제목 “(보훈정책실)”을 “(보훈문화정책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3명”을 “2명”으로 한다.

① 보훈문화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41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0호까지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국가보훈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34조제1항 관련)

조직	정원
1. 보훈단체협력관 1개 담당관	0명
2. 보훈문화정책실	1명
3. 보훈문화정책실 2개 과	10명
4. 보상정책국 1개 과	5명
5. 복지증진국 1개 정책관등	1명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하부조직) ① 국가보훈부에 운영지원과 · <u>보훈정책실</u> · 보상 정책국 · 복지증진국 및 제대군 인국을 둔다.	제4조(하부조직) ① ----- ----- <u>보훈문화정책실</u>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기획조정실장) ① <u>기획조정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u>	제7조(기획조정실장) ① <u>기획조정 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 · 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 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u>			
<u><신 설></u>	<u>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1 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 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u>			
<u>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u>	<u>③ ----- -----.</u>			
1. 부 내 각종 기획의 종합 · 조 정	1. 부 내 각종 정책과 주요 업무 계획의 수립 · 종합 및 조정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및 <u>중장기 발전전략의 수립 · 종 합 및 조정</u>			
<u><신 설></u>	4. 부 내 정책 관련 연구의 총괄 <u>· 조정</u>			

<신 설> 3. ~ 12.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3. ~ 17. (생 략)	5. 국가보훈위원회의 운영·관리 6. ~ 15. (현행 제3호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음) 16. 보훈과 관련된 국제 교류·협력 추진업무의 총괄·조정 17.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정보의 교환·수집 및 분석 18.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공동 조사·연구 및 기구의 설치 19.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행사의 공동 개최 및 지원 20.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21.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및 후손에 대한 예우·지원에 관한 사항 22. ~ 26. (현행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와 같음)
제11조(보훈정책실) ① 보훈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	제11조(보훈문화정책실) ① 보훈문화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좌기관 중 실장·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3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 2명-----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및 중장기 발전전략의 수립·종합 및 조정	<삭 제>
2. 보훈정책 및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삭 제>
3. 보훈정책의 분석 및 성과의 점검·확인	<삭 제>
4. 보훈정책 관련 연구의 총괄·조정	<삭 제>
5. 국가보훈위원회의 운영·관리	<삭 제>
6. 보훈과 관련된 국제 교류·협력 추진업무의 총괄·조정	<삭 제>
7.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정보의 교환·수집 및 분석	<삭 제>
8.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공동 조사·연	<삭 제>

구 및 기구의 설치	
9.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행사의 공동 개최 및 지원	<삭 제>
10.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삭 제>
11.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및 후손에 대한 예우·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12. ~ 41. (생 략)	1. ~ 30. (현행 제12호부터 제41호까지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68